

주식변동사항 신고서

신고인	성명(한글)		(한자)	
	소속		연락처(휴대전화)	
	직위(직급 등)			
	주소			

변동 내역	구분	종전		현재	
	주식종목수	상장	/ 비상장	상장	/ 비상장
	보유총액	(천원)		(천원)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6조의2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」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식거래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법원행정처장 귀하

유의사항

※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계좌번호, 주식의 거래일, 종목, 수량, 실거래가격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기재요령

- 변동내역
- 주식종목수는 종전 재산신고 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 수와 재산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 수를 기재하십시오(상장, 비상장 구분 기재).
 - 보유총액 :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십시오.